

## 부속서 8-라

###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베트남<sup>1</sup>

---

1 이 협정의 목적상,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장에 부속된 한쪽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당사국에게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한국-아세안 서비스 무역 협정」에 부속된 상응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각각의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I. 수평적 약속</b>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p>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p> <p>이 양허표의 각 구체적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외국 기업은 베트남에 사업협력계약<sup>2</sup>, 합작투자기업, 100 퍼센트 외국인투자기업 형태로 상업적 주재를 설립할 수 있음.</p> <p>외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대표 사무소가 베트남에 설립되는 것은 허용되나, 이들은 어떠한 직접적인 영리창출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함.<sup>3</sup></p> <p>이 양허표의 각 구체적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지점 설립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p>기존의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영업이나 서비스공급을 수립하거나 허가한 각 허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승인에 규정된 소유권, 영업 및 법적 형태와 활동 범위의 조건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는 조건보다 더 제한적이 되지 아니함.</p>	<p>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p> <p>보조금 수령 자격은 베트남 서비스 공급자, 즉 베트남 영역 내 또는 그 일부에 설립된 법인으로 제한될 수 있음. 주식화 과정을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한 일회성 보조금 지급은 이 약속의 위반이 아님. 연구 및 개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보건, 교육 및 시정각 분야 보조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소수 민족의 복지 및 고용 증진을 위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sup>2</sup> 사업협력계약은 두 명 이상의 당사자에 의하여 서명된 문서이고(최소한 한 당사자는 베트남의 법적 실체이고 한 당사자는 외국의 법적 실체이어야 함) 법적 실체를 설립하지 아니하고 베트남에서 투자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책임 및 양 당사자 간 사업결과 공유를 규정한 문서이다.

<sup>3</sup> 대표사무소는 무역 및 관광기회를 추구하고 증진하고자 베트남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의 하위조직이지만 어떠한 직접적인 영리창출활동에도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토지 임차를 위하여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토지 임차 기간은 해당 기업의 운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이고, 투자 허가에 규정되어야 하며, 해당 기업의 운영기간이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연장될 때마다 연장됨.</p> <p>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베트남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형태로 출자하는 것이 허용됨. 합자 상업은행의 주식 매수 형태의 출자 및 이 양허표에서 약속되지 아니한 분야의 경우, 베트남 법에 달리 규정되거나 권한 있는 베트남 당국에 의하여 허가되지 아니하는 한, 외국인 투자자가 각 기업에 보유하는 총 지분은 그 기업의 설립 자본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p> <p>이 양허표에 약속된 그 밖의 분야 및 하위 분야의 경우, 베트남 기업 인수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취득 수준은, 적용 가능한 경우, 과도기 형태의 제한을 포함하여 그에 규정된 외국 자본 참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에 상응함.</p>		
	<p>4) 다음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조치 외에는 약속 안함.</p> <p>(a) <u>기업 내 전근자</u></p> <p>베트남 영역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한 외국</p>	<p>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기업의 아래 정의된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로 그 외국 기업에 최소 1년 동안 고용되었고 해당 상업적 주재로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기업 내 전근자는 입국 및 최초 3년 동안의 체류가 허용되며, 해당 기업의 베트남 내 운영 기간에 따라 체류가 연장될 수 있음.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 총 수의 최소 20퍼센트는 베트남 국민이어야 함. 그러나, 각 기업당 최소 3명의 비베트남인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가 허용됨.</p> <p>관리자 및 임원은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한 외국 기업의 경영을 주로 지시하고, 기업 또는 기업의 부서나 하부 조직에 대한 지휘를 포함하여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을 받으며, 다른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직원의 업무를 감독 및 통제하고, 단독으로 고용 및 해고하거나 고용, 해고 또는 다른 인사상 조치를 권고할 권한을 가지며, 기업의 실제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임.</p> <p>전문가는 조직 내에서 근무하며 고도의 전문적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그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자연인임. 그러한 지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상업적 주재와 구체적으로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적 지식을 요하는 업무나 거래의 유형에 관한 고도의 기술 또는 자격의 보</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유 여부도 고려됨. 전문가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직의 일원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p> <p>(b) <u>그 밖의 인력</u></p> <p>베트남인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외국 기업의 베트남 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베트남 영역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한 외국 기업에 의해 베트남 영역 외부에서 고용된 자로, 위 (a)에 정의된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는 입국 및 해당 고용계약의 기간에 합치하는 기간 또는 최초 3년 중에서 짧은 기간 동안 체류가 허용되며, 해당 인력과 상업적 주재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따라 체류가 연장될 수 있음.</p> <p>(c) <u>서비스 판매인</u></p> <p>베트남 영역에 기반을 두지 아니하고, 베트남 내에 소재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i) 그러한 판매가 직접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ii) 판매자가 직접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자의 서비스 판매 협상을 위하여 그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는 것에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자. 이러한 판매자의 체류는 90일 기간으로 제한됨.</p> <p>(d) <u>상업적 주재 설립을 담당하는 자</u></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i) 직접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ii) 서비스 공급자가 베트남 외의 당사국 영역에 주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 내에 그 밖의 상업적 주재가 없는 경우, 베트남에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를 설립할 책임을 지는 법인 내 관리자 및 임원(위 (a)에 정의). 이들의 체류는 90일 기간으로 제한됨.</p> <p>(e) <u>계약 서비스 공급자(CSS)</u></p> <p>베트남에 상업적 주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 기업의 피고용인인 자연인은 베트남에 입국하여 90일의 기간 동안 또는 계약 존속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음. 다만, 다음 조건과 요건이 적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계약을 수주하였음.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이 계약의 선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함.</li> <li>- 이들은 다음 자격을 보유해야 함: (a)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식을 입증하는 기술 자격 문서, (b) 베트남 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전문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그 전문 자격, 그리고 (c) 그 분야에서 최소 5년의 전문적 경험</li> </ul>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계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인력의 수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많아서는 아니 되며, 이는 베트남 법과 규정 및 요건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음.</li> <li>- 이들은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 기업에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었던 자이어야 하며, 위에 기재된 “전문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li> </ul> <p>이러한 인의 입국은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CP 841-845, 849)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2)에 대하여 허용됨.</p>		
<b>II. 분야별 구체적 약속</b>			
<b>1. 사업 서비스</b>			
<b>A. 전문직 서비스</b>			
(a) 법률 서비스 (CPC 861, 다만, 다음 사항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변호사 조직 <sup>4</sup> 은 베트남에 다음 형태의 상업적 주재의 설립이 허용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법원에서 고객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소송 절차에 참가</li> <li>- 베트남법에 대한 법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변호사 조직의 지점</li> <li>- 외국 변호사 조직의 자회사</li> <li>- 외국 법무회사(로펌)<sup>5</sup></li> <li>- 외국 변호사 조직과 베트남 법률 파트너십</li> </ul>		

<sup>4</sup> “외국 변호사 조직”은 하나 이상의 외국 변호사 또는 법무회사에 의하여 어떠한 상업적 법인 형태로든 외국에서 설립된 개업 변호사의 조직이다(회사, 기업, 법인 등을 포함한다).

<sup>5</sup> 외국 법무회사는 베트남에서 법률 사무를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외국 변호사 조직에 의하여 베트남에 설립된 조직이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문서 작성 및 공증서비스)	간의 파트너십  자문 변호사가 베트남 법과 대학을 졸업하고 동종의 베트남 법률 전문가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 변호사 조직의 상업적 주재는 베트남법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CPC 86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세무 서비스 (CPC 86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건축 서비스 (CPC 86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 기업은 한국의 법인이어야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f)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 기업은 한국의 법인이어야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도시-농촌 개발 계획, 부문별 개발 계획을 위한 지형학, 지질공학, 수문지질학 및 환경 조사와 기술 조사 관련 서비스 공급은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조건으로 함. <sup>6</sup>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CPC 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일부 분야에서, 국가 안보 및 사회 안정을 위한 베트남정부의 규정에 따라, 외국 서비스 공급자가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 <sup>7</sup>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수의료 서비스 (CPC 932) <sup>8</sup>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사적 기업활동의 수행을 위해서만 그리고 수의료 당국의 허가에 따라 자연인의 접근이 허용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sup>6</sup>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은 GATS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정당화되는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이유로 제한이나 규제의 유지 또는 채택을 허용한다.

<sup>7</sup>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은 GATS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정당화되는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이유로 제한이나 규제의 유지 또는 채택을 허용한다.

<sup>8</sup> 수의료용 미생물 변종 보관은 제외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CPC 841-845, CPC 849)</b>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지점 설립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지점의 장이 베트남 거주자여야 한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C. 연구 개발 서비스</b>			
(a) 자연과학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임대/리스 서비스</b>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인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9)	1) 제한 없음. <sup>9</sup>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출자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투자가 허용되는 것 외에는 제한 없음. <sup>10</sup>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sup>11</sup> 2) 제한 없음. 3)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sup>12</sup>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장비는 수출입, 표준, 기술요건, 국가 안보, 국가 통신 기간 설비의 관리에 대한 관련 베트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리고 통신 허가와 주파수 및 라디오 장비 사용 허가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함.
<b>F. 그 밖의 사업 서비스</b>			
(a) 광고서비스 (CPC 871, 다만, 담배 광고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광고 서비스를 하도록 법적으로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투자 또는 사업협력계약을 설립하도록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포도주 및 증류주 광고는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규정을 따름.
(b) 시장조사 서비스 (CPC 864, 다만, 86402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인 출자가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51퍼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sup>9</sup> 광업 및 유전장비, 상업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는 제외한다.

<sup>10</sup> 광업 및 유전장비, 상업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는 제외한다.

<sup>11</sup> 광업 및 유전장비, 상업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는 제외한다.

<sup>12</sup> 광업 및 유전장비, 상업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는 제외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투자가 허용됨. 100퍼센트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경영컨설팅 서비스 (CPC 86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지점 설립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지점의 장이 베트남 거주자여야 한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경영 컨설팅 관련 서비스  - CPC 866(다만, CPC 86602 제외) - 사업자간 상업적 분쟁에 대한 중재 및 조정 서비스(CPC 8660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지점 설립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지점의 장이 베트남 거주자여야 한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 다만, 운송 차량의 적합성검사 및 운송 차량 인증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서비스가 정부의 권한 행사로 제공된다는 이유로 이전에 민간분야 경쟁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던 분야에 대한 민간 공급자의 접근을 베트남이 허용하는 경우, 민간분야 경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쟁에 대한 그러한 접근이 허용되는 날부터 3년 후부터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 없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작투자가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민간 분야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러한 접근이 허용된 날부터 5년 후부터 제한 없음.</p> <p>특정 지리적 지역에 대한 접근은 국가 안보를 사유로 제한될 수 있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f) 농업·수렵 및 임업 부수 서비스 (CPC 881) <sup>13</su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p> <p>합작투자 또는 사업협력계약의 형태에 한정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법정자본의 5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p> <p>특정 지리적 지역에 대한 접근은 제한될 수 있음.<sup>14</sup></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h) 광업 부수 서비스 (CPC 883)			
<p>1. 이 양허표에 명시된 약속은 다음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되지 아니함: 장비, 재료 및 화학물 공급, 공급기반 서비스, 연안/해양 지원선박, 숙박 및 케이터링, 헬리콥터 서비스.</p>			

<sup>13</sup> 산림개발, 희귀 야생동물 수렵 및 포획, 항공촬영, 항공과중 및 항공약제 분무 및 살포, 농업에서의 미생물 식물, 동물의 유전자원을 포함한 천연림 조사, 평가 및 개발 관련 서비스는 제외된다. 모호성 회피를 위하여, 축산업 및 중축개선은 이 약속에 포함된다.

<sup>14</sup>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는 GATS의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이유로 한 제한이나 규제의 유지 및 채택을 허용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2. 이 양허표에 명시된 약속은 GATS에 따른 베트남의 권리 및 의무와 완전히 합치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영역 또는 관할권 내에서 수행되는 석유 및 가스 관련 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베트남 정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			
	<p>1)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p> <p>상업적 주재가 없는 회사는 베트남의 적용 가능한 법에 기술된 조건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등록하도록 요구될 수 있음.</p> <p>2) 제한 없음.</p> <p>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p> <p>외국인 출자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투자가 허용됨. 100퍼센트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용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i) 제조업 부수 서비스 (CPC 884 및 885)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p> <p>외국인 출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투자가 허용됨. 100퍼센트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용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인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m)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sup>15</sup> (CPC 86751, 86752 및 86753에 한정함)	1)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상업적 주재가 없는 회사는 베트남의 적용 가능한 법에 기술된 조건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등록하도록 요구될 수 있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인 출자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투자가 허용됨. 100퍼센트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n) 장비의 유지 및 보수(선박,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장비는 포함되지 아니함) (CPC 63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인 출자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투자가 허용됨. 100퍼센트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b>			
B. 큐리어 서비스 (CPC 7512**)	1) 제한 없음. <sup>19</sup> 2)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경쟁활동에

<sup>15</sup> 탐사, 조사, 탐험 및 개발 관련 서비스 공급은 베트남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을 따른다.

<sup>19</sup>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은 수집 또는 배송을 위하여 현지 서비스 공급자와 제휴 하에 수행될 수 있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 특급 배달 서비스,<sup>16</sup> 즉, 국내 또는 해외 목적지를 불문하고 다음 항목의 수집, 분류, 운송 및 배달로 구성된 서비스:</p> <p>(a) 다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물리적 매체에 담긴 서신 송달<sup>17</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이브리드 메일 서비스</li> <li>- 다이렉트 메일(DM)</li> </ul> <p>가격이 다음보다 적은 서신 송달 항목의 취급은 제외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배송의 경우 최하위 중량등급에 속하는 표준 국내 우편 취급에 대한 관세의 10배</li> <li>- 국제 배송의 경우 US\$9</li> </ul> <p>다만, 이러한 항목의 총 무게가 2,000그램 미만일 경우에 한정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있어서 베트남 우체국 또는 그 자회사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됨.</p>

<sup>16</sup> 특급 배달 서비스는 빠른 속도와 신뢰성에 추가하여 발신지로부터 수집,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 배송 추적, 배송 중 목적지 및 주소 변경 가능, 수취 확인과 같은 부가가치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sup>17</sup> 서신 송달에는 편지, 엽서, 수기문 또는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잡지 등의 인쇄물 또는 청구서와 송장 등의 상업적 문서가 포함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소포 <sup>18</sup> 및 그 밖의 물품 * 주소지 불명 물품의 취급			
<b>C. 통신 서비스</b>			
<p>이 양허표의 약속은 “기본통신서비스 약속에 관한 양허를 위한 주해” (S/GBT/W/2/Rev.1) 및 “주파수 가용성에 관한 시장 접근 제한”(S/GBT/W/3)에 따라 작성됨. 이들 약속의 목적상 “비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란 전송 용량은 갖추지 아니하였지만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해저 케이블 전송 용량을 포함한 그러한 전송용량계약(장기 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말함. 비 설비기반 공급자는 사내 및 허용된 공공서비스공급지점(POP) 내에서 통신 장비를 소유하는 것을 달리 배제하는 것은 아님.</p>			
<b>기본 통신 서비스</b>  (a) 음성 전화 서비스 (CPC 7521)  (b) 패킷 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CPC 7523**)  (c) 회선 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CPC 7523**)  (d) 텔렉스 서비스 (CPC 7523**)  (e) 전신 서비스 (CPC 7523**)	1)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i>유선기반 및 이동통신 서비스:</i> 베트남에서 설립되고 국제 통신 서비스 공급 허가를 받은 실체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i>위성 기반 서비스:</i> 다음 대상에게 제공되는 위성 기반 서비스 외에는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베트남의 국제 위성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따름.  -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역외/해상 기반 기업 고객, 정부 기관,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 공식 국제기구 대표 사무소, 외교대표부 및 영사관, 첨단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1) 제한 없음.	베트남은 첨부된 참조 문서의 의무를 약속함.  베트남이 회원국인 해저 케이블 링크 컨소시엄의 경우,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베트남 내 허가받은 케이블 육양국까지 연결된 100퍼센트 자기 소유 해저 케이블 전송 용량(예, 장기계약을 통한 회선 임대(IRU) 또는 컨소시엄 소유권)을 통제하도록 허용되고 베트남 내 허가받은 국제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와 국제 VPN 및 IXP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러한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sup>18</sup> 도서, 카탈로그는 이 양허표에 포함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팩시밀리 서비스 (CPC 7521**+7529**)	-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다국적 기업 <sup>22</sup>  2)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g) 전용 회선 서비스 (CPC 7522**+7523**)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i>비 설비기반 서비스:</i> 파트너 선택에 대한 제한 없이 합작투자가 허용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6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3) 제한 없음.	
(o*) 그 밖의 서비스  - 화상회의 서비스 (CPC 75292) - 방송 <sup>20</sup> 을 제외한 비디오 전송 서비스 - 전파 기반 서비스는 다음 사항을 포함함: + 이동 전화(지상 및 위성) + 이동 데이터(지상 및 위성) + 호출 + PCS + 주파수 공용 - 인터넷 교환 서비스 (IXP) <sup>21</sup>	<i>설비기반 서비스:</i>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투자가 허용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합작투자 지분의 51퍼센트를 보유하면 경영권을 확보함.  통신 분야에서 사업협력계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는 현재 계약을 갱신하거나 현재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형태의 설립체로 전환할 수 있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up>20</sup> 방송은 일반 대중에게 TV 및 라디오프로그램 신호를 배급하는 데 필요한 연속적 전송고리로 정의되나, 사업자 간 기여회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sup>21</sup> 인터넷 접속 서비스(IAS) 공급자에게 그들 간 연결 및 국제인터넷백본망과의 연결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sup>22</sup> 다국적 기업은 다음조건을 갖춘 법인을 의미함: a)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를 가지고 있음 b) 최소 하나의 다른 당사국에서 운영 중임. c) 최소 5년 동안 사업을 운영함. d) 당사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음. 그리고 e) 최소 하나의 당사국에서 위성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허가받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기본 통신서비스:</p> <p>(o*) 그 밖의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개인통신망 (VPN)<sup>23</sup></li> </ul>	<p>1)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p> <p><i>유선 및 이동통신 서비스:</i> 베트남에 설립되고 국제 통신 서비스 공급 허가를 받은 실체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p> <p><i>위성 기반 서비스:</i> 다음 대상에게 제공되는 위성 기반 서비스 외에는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베트남의 국제 위성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따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역외/해상 기반 기업 고객, 정부 기관, 설비 기반 서비스 공급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 공식 국제기구의 대표 사무소, 외교대표부 및 영사관, 첨단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li> <li>-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다국적 기업<sup>22</sup></li> </ul> <p>2) 제한 없음.</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베트남은 이 양허표에 첨부된 참조 문서의 의무를 약속함.</p> <p>베트남이 회원국인 해저 케이블 링크 컨소시엄의 경우,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베트남 내 허가받은 케이블 육양국까지 연결된 100퍼센트 자기 소유 해저 케이블 전송 역량(예, 장기계약을 통한 회선 임대(IRU) 또는 컨소시엄 소유권)을 통제하도록 허용되고 베트남 내 허가받은 국제 설비 기반 서비스 공급자와 국제 VPN 및 IXP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러한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p>

<sup>23</sup> VPN 생성 전에 정의된 폐쇄 사용자 그룹의 회원들 간에 비영리목적으로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공유) 네트워크 위에 사설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로 상업적 조건으로 제공된다. 그러한 그룹은 기업그룹이나 조직, 또는 공통의 이익추구를 통하여 제휴관계가 형성된 법적 실체들의 그룹을 포함할 수 있다. VPN 서비스를 이용하는 폐쇄이용자 그룹의 초기 회원들은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한 다이얼 또는 경로 계획에 기재되어야 하며 권한 있는 당국의 감독을 받는다. VPN 서비스 공급자는 실제로 상용서비스를 개시하기 최소 2주(영업일 기준) 전에 회원 변경을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하고 이 2주(영업일 기준) 동안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면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회원들은 제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VPN 서비스를 재판매할 수 없다. VPN은 제휴관계가 없는 제3자의 또는 제3자 간 트래픽을 수행 또는 이전할 수 없다. VPN 서비스는 허가받은 외국인의 투자를 받은 서비스공급자에 의하여 인터넷접속서비스 및 (h)부터 (n)까지에 기재된 부가서비스와 함께 공급될 수 있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p> <p><i>비 설비기반 서비스:</i> 파트너 선택에 대한 제한없이 합작투자가 허용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p> <p><i>설비기반 서비스:</i>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투자가 허용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u>부가서비스</u></p> <p>(h) 전자메일 (CPC 7523**)</p> <p>(i) 음성메일 (CPC 7523**)</p> <p>(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CPC 7523**)</p> <p>(k) 전자적 데이터교환 (EDI) (CPC 7523**)</p> <p>(l)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부</p>	<p>1)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p> <p><i>유선 및 이동통신 서비스:</i> 베트남에서 설립되고 국제 통신 서비스 공급 허가를 받은 실체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p> <p><i>위성 기반 서비스:</i> 다음 대상에게 제공되는 위성 기반 서비스 외에는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베트남 국제 위성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따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역외/해상 기반 기업 고객, 정부 기관,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공급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 공식 국제기구 대표 사무소, 외교대표부 및 영사관, 첨단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li> </ul>	<p>1) 제한 없음.</p>	<p>베트남은 이 양허표에 첨부된 참조 문서의 의무를 약속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가 팩시밀리 서비스 (CPC 7523**)</p> <p>(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p> <p>(n)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 (CPC 843**)</p>	<p>발 센터</p> <p>-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다국적 기업<sup>22</sup></p> <p>2) 제한 없음.</p> <p>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p> <p><i>비 설비기반 서비스:</i> 사업협력계약 또는 합작투자가 허용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6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p> <p><i>설비기반 서비스:</i>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사업협력계약 또는 합작투자가 허용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p> <p>합작투자 지분의 51퍼센트를 보유하면 경영권을 확보함.</p> <p>통신 분야에서 사업협력계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는 현재 계약을 갱신하거나 현재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형태의 설립체로 전환할 수 있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u>부가서비스</u></p> <p>(o) 기타</p>	<p>1) <i>유선 및 이동통신 서비스:</i> 베트남에서 설립되고, 국제 통신 서비스 공급면허를 받은 실체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p>	<p>1) 제한 없음.</p>	<p>베트남은 이 양허표에 첨부된 참조 문서의 의무를 약속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인터넷 접속 서비스 (IAS) <sup>24</sup>	<p><i>위성 기반 서비스:</i> 다음 대상에게 제공되는 위성 기반 서비스 외에는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베트남 국제 위성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따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역외/해상 기반 기업 고객, 정부 기관, 설비 기반 서비스 공급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 공식 국제기구 대표 사무소, 외교대표부 및 영사관, 첨단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li> <li>-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다국적 기업<sup>22</sup></li> </ul> <p>2) 제한 없음.</p> <p>3) <i>비 설비기반 서비스:</i>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통신 공급자와의 합작투자가 허용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6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p> <p><i>설비기반 서비스:</i>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투자가 허용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sup>24</sup> 최종 이용자에게 인터넷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D. 시청각 서비스</b>			
영화 제작, 배급 및 상영 서비스의 경우 모든 영화의 내용은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검열되어야 함.			
(a) 영화 제작 (CPC 96112, 비디오 테이프 제외)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베트남에서 이들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가받은 베트남파트너와의 사업협력계약 또는 합작투자 형태로만 가능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5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영화 배급 (CPC 96113, 비디오 테이프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베트남에서 이들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사업협력계약 또는 합작투자 형태로만 가능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영화 상영 서비스 (CPC 9612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베트남에서 이들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사업협력계약 또는 합작투자 형태로만 가능함. 외국인 출자는 법정자본의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베트남의 문화회관, 영화상영관, 공공영화 클럽 및 협회와 이동 상영팀은 외국 서비스 공급자와 사업협력계약 또는 합작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녹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b>			
A. 빌딩 관련 일반 건설업 (CPC 512)  B. 토목 관련 일반 건설업 (CPC 513)  C. 설치 및 조립 (CPC 514, 516)  D.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CPC 517)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지점 설립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지점의 장이 베트남 거주자여야 한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기술적 실현 가능성의 부족에 기인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기타 (CPC 511, 515, 518)			
<b>4. 유통 서비스</b>			
<u>유통 서비스의 모든 하위 분야에 적용 가능한 조치:</u>			
담배와 시가, 도서, 신문과 잡지, 매체를 불문한 영상 녹화물, 귀금속 및 보석, 의약품과 약 <sup>25</sup> , 폭발물, 가공유와 원유, 쌀, 수수설탕과 첨채당은 약속에서 제외됨.			
A. 위탁 중개인서비스 (CPC 621, 61111,6113, 6121)	1)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한 없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개인적 사용을 위한 상품 유통 - 개인적 및 상업적 사용을 위한 합법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통	1) 공급형태 1, 시장접근란에 표시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도매 서비스 (CPC 622, 61111,6113, 6121)	2)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C. 소매 서비스 (CPC 631+632, 61112, 6113, 6121) <sup>26</sup>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유통 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회사는 모든 합법적 수입품 및 국내 생산품에 관한 위탁중개업, 도매업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됨. 소매 서비스를 위한 아웃렛의 설립은 (첫 번째 아웃렛 제외) 경제적 수요 심사(ENT) <sup>27</sup> 를 기반으로 허용됨.	3) 제한 없음.	

<sup>25</sup> 이 양허표의 목적상 “의약품과 약” 은 정제, 캡슐 또는 분말형태의 비의약품 영양보조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sup>26</sup>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은 적절한 훈련과 인증을 받고 자신의 판매노력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된 유통업자에 의한 추가판매로 이어지는 판매지원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 고정된 장소에서 벗어나서 활동하는 베트남 개별 위탁중개인에 의한 다단계판매도 포함한다.

<sup>27</sup> 하나를 초과하는 아웃렛 설립 신청은 미리 수립되어 대중에게 공개된 절차를 따르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승인된다. 경제적 수요 심사의 주요 기준은 특정 지리적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프랜차이즈 서비스 (CPC 8929)	1)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지점 설립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2) 제한 없음. 3) 지점의 장이 베트남 거주자여야 한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5. 교육 서비스</b>			
기술과학, 자연과학 및 기술, 경영관리와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국제법 및 언어교육 분야에 한정함.			
아래 (C), (D) 및 (E)의 경우, 교육내용은 베트남 교육훈련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B. 중등 교육 서비스 (CPC 92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고등 교육 서비스 (CPC 92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투자 학교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교사는 최소 5년의 교수 경험을 보유하고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아야 함.	
D. 성인 교육 서비스 (CPC 924)			

구역 내의 기존 서비스 공급자의 수, 시장안정성 및 지리적 규모를 포함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인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그 밖의 교육 서비스 (CPC 929, 외국어 교육 포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6. 환경 서비스</b> 특정 지리적 구역에 대한 접근은 국가 안보에 관한 이유로 제한될 수 있음 <sup>28</sup> .			
A. 폐수 서비스 (CPC 9401)	1) 관련 자문 서비스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GATS 1:3(c)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공공 독점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관련 자문 서비스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외국 기업은 베트남에서 BOT(건설-운영-이전) 및 BTO(건설-이전-운영) 방식으로 사업 활동하는 것이 허용됨.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sup>29</sup>	1) 관련 자문 서비스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GATS 1:3(c)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공공 독점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함.  공공복지 보장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은 가정으로부터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는 것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외국 기업은 베트남에서 BOT(건설-운영-이전) 및 BTO(건설-이전-운영) 방식으로 사업 활동하는 것이 허용됨.

<sup>28</sup>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은 GATS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정당화되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한이나 규제를 유지 또는 채택하는 것이 허용된다.

<sup>29</sup> 폐기물 수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다. 유해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은 법에 의하여 규제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이 제한됨. 이들은 현지 시도 당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수거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그 밖의 서비스 - 배기가스 정화서비스 (CPC 94040) 및 소음 저감 서비스 (CPC 94050)	1) 관련 자문 서비스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GATS 1:3(c)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공공 독점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관련 자문 서비스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환경 영향 평가 서비스 (CPC 9409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7. 금융 서비스</b>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a. 직접보험	1)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 외국인투자자본기업, 베트남 내 근무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보험 서비스 - 재보험 서비스	1)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a)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외한 생명보험 (b) 손해보험 서비스  b. 재보험 및 재재보험  c.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d. 보험 부수 서비스(상담, 계리, 위험 평가 및 손해 사정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을 포함한 국제 운송 관련 보험 서비스:</li> <li>+ 다음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국제 해상 운송 및 국제 상업 항공: 운송 중의 화물, 화물 운송 차량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li> <li>+ 국제 운송 화물</li> <li>- 보험 중개 및 재보험 중개 서비스</li> <li>- 상담, 계리, 위험 평가 및 손해 사정 서비스</li> </ul>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 보험회사의 손해보험 지점은 건전성 규제를 조건으로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에 관한 약속은 GATS 제6조 및 금융 서비스 부속서 제2항가호와 합치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공포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약속됨. 일반 규칙으로서 그리고 비차별적으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 또는 상품의 권유는 관련 제도적 및 법적 형식 요건을 조건으로 함.			
(a)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1) B(k) 및 B(l)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1) B(k) 및 B(l)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인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인수</p> <p>(b) 소비자 대출, 주택담보 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여신</p> <p>(c) 금융 리스</p> <p>(d)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 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한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p> <p>(e) 보증 및 약정</p> <p>(f)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 증서를 포함한다)</li> <li>- 외환</li> <li>- 환율 및 이자율 상품(스왑, 선도 금리 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li> <li>- 금피</li> </ul> <p>(h) 자금중개업</p>	<p>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p> <p>(a) 외국신용기관은 다음 형태로만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 설립이 허용됨.</p> <p>(i) 외국 상업은행의 경우: 대표사무소, 외국 상업은행의 지점, 외국인 출자가 설립자본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업 합작투자 은행, 합작투자 금융 리스회사, 100퍼센트 외국인 투자 금융 리스회사, 합작투자 금융회사 및 100퍼센트 외국인투자 금융회사, 그리고 100퍼센트 외국인 소유 은행.</p> <p>(ii) 외국 금융회사의 경우: 대표사무소, 합작투자 금융회사, 100퍼센트 외국인투자 금융회사, 합작투자 금융리스회사 및 100퍼센트 외국인투자 금융리스회사.</p> <p>(iii) 외국 금융 리스회사의 경우: 대표사무소, 합작투자 금융리스회사 및 100퍼센트 외국인 투자 금융리스회사.</p> <p>(b) 지분 참여:</p> <p>(i) 베트남은 지분화된 베트남 국영은행에 대한 외국신용기관의 지분 참여를 베트남 은행의 지분 참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음.</p> <p>(ii) 주식매수 형태의 출자의 경우, 외국 기관 및 개인이 보유하는 각 베트남 합자 상업은행의 총 지분은 달리 베트남 법</p>	<p>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p> <p>(a) 베트남에 외국 상업은행의 지점 설립을 위한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전년도말 기준으로 모은행의 총 자산이 미화 200억 달러 초과.</li> </ul> <p>(b) 합작투자은행 또는 100퍼센트 외국인 소유 은행의 설립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전년도 말 기준으로 모은행의 총 자산이 미화 100억 달러 초과.</li> </ul>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형태의 집합 투자운용, 연기금 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 서비스와 같은 자산 운용  (j)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한 금융 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k)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 정보와 금융 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l)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a)부터 (k)호까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 서비스	에 의해 규정되거나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은행 설립자본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c) 외국 상업 은행의 지점: - 지점 사무소 외부에 다른 거래점을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d) 외국신용기관은 내국민 대우 원칙을 기반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100퍼센트 외국인투자 금융회사 또는 합작투자 금융회사, 100퍼센트 외국인 투자 금융리스회사 또는 합작투자 금융리스회사의 설립 조건:  - 신청 전년도 말 기준으로 외국신용기관의 총 자산이 미화 100억 달러 초과.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C. 증권</b>  (f)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1) C(k) 및 C(l)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한 파생 상품</li> <li>- 양도성 증권</li> <li>- 금괴를 제외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 자산</li> </ul> <p>(g)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p> <p>(i)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운용, 연기금 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 서비스와 같은 자산 운용</p> <p>(j) 증권, 파생 상품 및 그 밖의 증권 관련 상품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p> <p>(k) 증권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 정보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p> <p>(l) (f)를 제외하고, 투자</p>	<p>3) 외국 증권 서비스 공급자는 대표사무소 및 외국인 출자가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투자 설립이 허용됨.</p> <p>100퍼센트 외국인 투자 자본에 의한 증권 서비스 공급자는 허용됨.</p> <p>C(i)부터 C(l)까지의 서비스에 대하여 외국 증권 서비스 공급자의 지점이 허용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증권 관련 서비스(1)의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은행 분야의 (1) 참고).			
<b>8. 보건 관련 및 사회복지 서비스</b>			
A. 병원 서비스 (CPC 9311)  B. 의료 및 치과 서비스 (CPC 93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100퍼센트 외국인 투자병원,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투자나 사업협력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병원 서비스의 상업적 주재에 대한 최소 투자 자본은 병원의 경우 미화 2000만 달러, 외래 진료소의 경우 200만 달러 그리고 전문의 진료소의 경우 20만 달러임.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9.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b>			
A. 다음을 포함한 호텔 및 레스토랑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텔 숙박 서비스 (CPC 64110)</li> <li>- 국내 소비를 위한 음식제공서비스 (CPC 642) 및 음료제공서비스 (CPC 643)</li> </ul>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여행 알선 대행 서비스 (CPC 74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외국인 출자에 대한 제한 없이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투자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투자기업의 관광안내원은 베트남 시민이어야 한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 서비스 공급회사는 인바운드 서비스 및 인바운드 서비스의 불가결한 일부로 입국 관광객을 위한 국내 여행 서비스만을 할 수 있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10.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b>			
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연극, 라이브밴드 및 서커스 서비스 포함) (CPC 9619)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출자가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투자가 허용된다는 점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기타  - 전자게임업 (CPC 96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허가를 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사업협력계약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또는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법정자본의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11. 운송 서비스</b>			
<b>A. 해상운송 서비스</b>			
(a) 연안운송을 제외한 여객 운송 (CPC 7211)	1) 국제 화물 운송 외에는 약속 안함.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베트남 국적 선단 운영 목적의 등록 회사 설립:	1) 국제 화물 운송 외에는 약속 안함.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국제 해운 공급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다음 항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b) 연안운송을 제외한 화물 운송 (CPC 7212)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외국인 출자가 전체 법정자본의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투자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됨. 외국 선원은 베트남 합작투자가 소유한 베트남 국적 선박(또는 베트남에 등록된 선박)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나 선박 전체 피고용인의 1/3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선장 또는 최초 최고책임자는 베트남 시민이어야 함.  (b) 국제 해운 서비스 공급을 위한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 <sup>30</sup> :		1. 도선 2. 예선지원 3. 식량, 연료공급 및 급수 4.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5. 선석배정/항만 관리인 서비스 6. 항행원조 7. 통신, 급수 및 전기 공급을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기반 운영 서비스 8. 비상 보수 시설 9. 정박, 접안지 및 선박접안서비스

<sup>30</sup> “국제 해운 서비스 공급을 위한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란 외국운송회사가 자신이 운송하는 화물과 관련되고 고객에게 통합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현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서 국제해운은 실질적인 요소를 구성하며 해당 외국운송회사에 의하여 제공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외국 운송회사는 100퍼센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p> <p>외국인투자기업은 아래 기재된 (1)에서 (7)까지의 활동만 수행하는 것이 허용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견적부터 송장작성까지 고객과의 직접 연락을 통한 해운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li> <li>2. 화물 소유주를 대신한 업무수행</li> <li>3. 요구되는 사업 정보의 제공</li> <li>4. 통관 문서 또는 운송되는 화물의 원산지 및 성격 관련 그 밖의 문서를 포함한 운송 문서에 관한 서류 작성</li> <li>5. 통합운송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연안운송 서비스를 포함한 베트남 국적 선박에 의한 해운 서비스 공급</li> <li>6. 필요한 때, 선박기항을 편성하거나 화물을 접수하는 회사를 대신한 업무수행</li> <li>7. 회사에 의하여 운송되는 화물과 관련하여 도로, 철도, 내륙 수로 운송 계약의 협상 및 서명</li> </ol>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10. 해운대리업 서비스 접근 <sup>31</sup>
해운 부수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약속 안함.</li> <li>2) 제한 없음.</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약속 안함.</li> <li>2) 제한 없음.</li> </ol>	

<sup>31</sup> 추가적 약속란에 언급된 해운대리업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도로, 철도, 내륙수상, 해안 및 내륙운송과 관련 부수 서비스가 이 양허표에 달리 완전하게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복합운송사업자는 해상으로 운송되는 국제화물의 지속적인 운송을 위하여 베트남 해운대리업 서비스 공급자를 통하여 트럭, 철도차량 또는 바지선 및 관련 장비를 임차하거나 빌릴 수 있어야 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 (CPC 7411) <sup>32</sup>	3) 외국인 출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투자 설립이 가능한 점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통관 서비스 <sup>33</sup>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소유 제한없이 합작투자가 설립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sup>34</sup>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B. 내륙 수상 운송</b>  (a) 여객 운송 (CPC 7221)  (b) 화물 운송 (CPC 722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서비스공급자는 외국인 출자가 총 법정자본의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베트남 파트너와 설립한 합작투자를 통하여서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up>32</sup> 공공영역 점거의 경우, 공공사업의 허가 또는 면허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sup>33</sup> “통관 서비스” (또는 “관세사서비스”)는 이 서비스가 서비스 공급자의 주요 활동 또는 주요 활동의 일상적인 보조 활동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 수출 또는 화물의 통운송과 관련하여 다른 자의 통관절차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을 말한다.

\* 이 공급형태에 대한 약속은 실현 가능하지 아니하다.

<sup>34</sup>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는 컨테이너의 하역, 수선 및 선적준비작업을 위하여 항구나 내륙에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안함.	안함.	
<b>C. 항공 운송 서비스</b>			
(a)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항공사는 베트남에 있는 발권 사무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컴퓨터 예약 서비스	1) 외국 서비스 공급자가 베트남 통신당국의 관리 하에 있는 공공 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2) 공급형태 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3) 공급형태 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항공기 유지 및 보수 (CPC 8868**)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100퍼센트 외국인투자 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E. 철도 운송 서비스</b>			
(a) 여객 운송 (CPC 711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외국 공급자는 외국인 출자가 총 법정자본의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베트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b) 화물 운송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PC 7112)	파트너와 함께 설립한 합작투자를 통하여 화물 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F. 도로 운송 서비스</b>  (a) 여객 운송 (CPC 7121+7122)  (b) 화물 운송 (CPC 712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사업협력계약 또는 외국인 출자가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투자를 통하여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시장의 필요성 <sup>35</sup> 을 조건으로 외국인 출자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투자가 화물 운송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설립될 수 있음.  합작투자의 운전인력은 100퍼센트 베트남 시민이어야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H. 모든 운송 형태의 부수 서비스</b>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외국인 출자가 50퍼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sup>35</sup> 고려되는 기준은 특히 다음과 같다: 신규 일자리 창출, 외환계정 흑자, 경영기법을 포함한 선진 기술의 도입, 산업공해 감소, 베트남 종업원 직업교육 등.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a)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 (공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제외) (CPC 7411의 일부)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보관 및 창고 서비스 (CPC 742) (c) 화물 운송 주선 서비스 (CPC 748) <sup>36</sup>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기타 (CPC 749의 일부) <sup>37</sup>	1) 화물 중개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설립한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화물 중개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up>36</sup> 화물 운송 주선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인수, 문서 작성 및 영업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송하인을 대신하여 선적물 운영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말한다.

\* 이 공급형태에 대한 약속은 실현 가능하지 아니하다.

<sup>37</sup> 다음 활동을 포함: 청구서 감사, 화물 중개 서비스, 화물 검사, 계근 및 샘플링 서비스, 화물 수취 및 인수 서비스, 운송서류 작성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는 화물주를 대리하여 제공된다.



## 참조 문서

### I. 적용범위

다음은 기본통신 서비스를 위한 규제적 틀에 대한 정의 및 원칙이다.

#### 정의

이용자란 서비스 소비자 및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에 해당하는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기본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을 말한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급자이다.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 1. 경쟁보장장치

#### 1.1 통신에서의 반경쟁적 관행의 방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된다.

#### 1.2 보장장치

상기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나.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는 것, 그리고

다.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상업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를 그 공급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 2. 상호접속

2.1 이 부분은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 하나의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에 적용된다.

## 2.2 보장되는 상호접속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그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보장될 것이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 가.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효율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신의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제공된다.
- 나.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시의적절하게 제공된다. 그리고
- 다.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된다.

## 2.3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절차의 공개적 이용 가능성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는 공개될 것이다.

## 2.4 상호접속 약정의 투명성

지배적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접속협정이나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공개할 것이 보장된다.

## 2.5 상호접속: 분쟁 해결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서비스 공급자는,

- 가. 언제라도, 또는
- 나. 공개적으로 명시된 합리적인 기간 이후

상호접속을 위한 적절한 조건 및 효율이 이전에 수립되지 아니한 한도에서, 이와 관련된 분쟁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제5항에 언급된 규제기관일 수 있는 독립적인 국내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것이다.

## 3. 보편적 서비스

어떠한 당사국이라도 자국이 유지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의무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당사국에 의하여 정의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다면, 그 자체로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다.

#### 4. 허가 기준의 공개적 이용 가능성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다음이 공개될 것이다.

가. 모든 허가 기준 및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그리고

나. 개별 허가의 조건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 거부 사유는 신청자에게 통지될 것이다.

#### 5. 독립적인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어떠한 기본통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도 분리되어 있고 어떠한 기본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규제기관의 결정과 규제기관이 이용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다.

#### 6.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모든 절차는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은 공개될 것이나, 특정한 정부의 사용을 위하여 분배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 제8.3조 면제 리스트

분야 또는 하위분야	제8.3조와의 불합치성을 보여주는 (분야에 적용될) 조치에 대한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	의도되는 존속기간	최혜국 대우 면제 필요성을 창출하는 조건
모든 분야 상업적 주재	양자투자협약에 따라 특혜대우를 제공하는 조치	베트남과 양자투자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	무기한	베트남 내 투자 촉진
시청각 서비스 -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상물의 제작, 배급 및 상영	시청각 작품 공동제작협정의 적용 대상인 시청각 작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그러한 협정을 기반으로 하는 조치	현재 또는 미래에 그러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약이 발효되는 WTO 회원국	무기한	이러한 협정의 목표는 관련 국가들 간의 문화적 연계성을 증진하는 것임.
시청각 서비스 -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상물의 제작 및 배급	시청각 작품 및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그러한 작품의 공급자에게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	문화협력분야에서 양자 및 다자간 협약을 서명한 WTO 회원국	무기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베트남이 장기적인 문화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임.
시청각 서비스 - 대중에 대한 방송 전송을 통한 시청각 작품의 제작 및 배급	방송 전송 접근에 관한 특정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시청각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제공하는 조치	문화협력분야에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약을 체결한 WTO 회원국	무기한	이러한 조치들은 그 분야 내에서 베트남 내부 및 지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해운	외국 운송회사가 완전히 소유하는 자회사의 통상적인 영업 활동에 해당되는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조치	해운협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 모든 WTO 회원국	5년	양자 협약
해상운송 서비스 - 내륙 육로 트럭 화물 운송 - 화물 보관과 창고, 및 - 컨테이너 야적장	3가지 하위분야는 베트남과 싱가포르 간의 해운협약에 따른 특혜 대우의 대상이 됨.	싱가포르 공화국	10년	양자 협약